



경산시



수신자 대구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축제·행사용 확성기 소음민원 해소 요청

1.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구대학교 주변으로 다가구주택(원룸)이 밀집되어 거주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동 지역에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3. 지난 대학축제 때 밤 12시가 지나도록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 7시 20분쯤까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러서 잠을 못 잤다는 불편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4. 각종 축제·행사시 확성기 사용시간은 가급적 24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변에 불편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르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피해자측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소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함)	시간대 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확성기(옥외설치)	60dB(A)이하	65dB(A)이하	60dB(A)이하
	확성기(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50dB(A)이하	55dB(A)이하	45dB(A)이하
상업지역	확성기(옥외설치)	65dB(A)이하	70dB(A)이하	60dB(A)이하
	확성기(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60dB(A)이하	65dB(A)이하	55dB(A)이하

나. 문의처 : 경산시 녹색환경과(053-810-5478).

6.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이은수 추후 행사진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장



주무관	배정수	환경지도담당	이상혁	환경관리담당	대결06/01 김양식	녹색환경과장	전결
협조자							
담당(의견있음)	이은수	학생지원팀장	김지홍	학생행복지원처장	전결06/04 최웅용		
협조자							

시행 녹색환경과-15578 (2015-06-01) 접수 학생지원팀-549 (2015.06.04)

우 712703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 <http://www.gbgs.go.kr/>

전화 810-5478 전송 810-6189 / rok762121@korea.kr / 부분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